#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4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종민·복기왕·이재관

이광희 • 정일영 • 임미애

김영배 • 이용선 • 서영교

윤한홍 · 최형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 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법률 제 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 ②                  |
|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                    |
| 하는 때에는 <u>관계 중앙행정기</u> | 관계 지방자치단           |
| <u>관의 장과</u> 협의하고 공청회를 | 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   |
|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                    |
|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      |                    |
|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       |                    |
| 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                    |
|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
| 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                    |
| 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                    |
|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       |                    |
| 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